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8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 의 자: 민형배·김문수·이개호

안도걸 · 소병훈 · 주철현

이성윤 • 박홍배 • 정동영

윤준병 · 김용민 · 조인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·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.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서 거래됩니다.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,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.

현재 「공연법」,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.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.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.

이에,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.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,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(안 제7 조의3 및 제19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이스포츠 경기 입장권·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·관람권 또는 할인권·교환권 등(이하 "입장권등"이라 한다)의 부정판매(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9조(벌칙)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3(이스포츠 경기 입장권
	정판매(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 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방지하기 위하여
<u><신 설></u>	노력하여야 한다. ②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・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제19조(벌칙)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

<u>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</u> <u>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